2012년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전국모의고사

제47회 공인회계사자격시험 제1차 해답

- 2012년 2월 3일 시행 -

출제위원		
	경영학	민석준
		김용석
	경제원론	김진욱
	상법	김혁붕
	세법개론	정우승
		유은종
	회계학	김기동
		이승근

경영학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⑤	19. ⑤	20. ④
21. ①	22. ④	23. ②	24. ③	25. ②	26. ④	27. ②	28. ③	29. ③	30. ②
31. ①	32. ④	33. ③	34. ②	35. ①	36. ①	37. ⑤	38. ①	39. ⑤	40. ③

01 ②

상황이론

02 ①

횡적, 수직적, 대각선적 연결관계(연결핀 관계)

03 ③

성장 욕구가 낮은 경우

04 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05 ⑤

06 ④

분화가 높은 산업

07 ③

직무 충실화, 수직적 직무확대

08 ②

구성개념 타당성

09 ④

사업부별 전략

19 ⑤

a. 생산자 위험
c. ISO 14000
d. 표준분포를 이용

20 ④

수작업

21 ①

EOQ 감소

22 ④

23 ②

종속수요

24 ③

재생형 MRP에 대한 설명

25 ②

b. 어제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의 상관계수가 없으면 약형 효율적 시장이다.
d. PER가 낮은 가치주의 성과가 PER가 높은 성장주의 성과보다 좋으면 시장은 준강형 효율적이지 않다.
e. 배당할인모형에서 배당성향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 또는 하락한다.
a와c는 모두 맞는 설명임

26 ④

d. CML의 포트폴리오는 수동적 포트폴리오이다.
a, b, c, e는 모두 맞는 설명임

27 ②

a. 물가가 상승하면 무위험이자율은 증가하지만 시장위험프리미엄은 변동이 없다. .
b.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SML의 요구수익률은 변함이 없다.
e. 잔차분산이 증가하면 SML의 요구수익률은 변함이 없다. .
c와 d는 맞는 설명임.

34 ②

a. 이자율이 상승하면 듀레이션의 작은 채권이 유리하므로 액면이자율이 높은 채권이 유리하다.
c.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므로 일반채권이 더 유리하다.
b, d, e는 맞는 설명임

35 ①

k 〉 0이면 우상향 수익률 곡선이므로 R(1) 〈 C 〈 R(2) 〈 f이므로 a, c 모두 틀림
k 〈 0이면 우하향 수익률 곡선이므로 R(1) 〉 C 〉 R(2) 〉 f이므로 d는 틀리고 b만 정답임

36 ①

b. 콜옵션의 감마는 양(+)의 값, 풋옵션의 감마는 양(+)의 값을 갖는다.
c. 콜옵션의 시간가치는 항상 양수이며 풋옵션의 시간가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
e. 콜옵션의 베가는 양(+)의 값, 풋옵션의 베가는 양(+)의 값을 갖는다.

37 ⑤

u = 19,200 / 16,000 = 1.2　　d = 12,800 / 16,000 = 0.8　　p = {1.1 - 0.8} / {1.2 - 0.8} = 0.75
C = 4,200 × 0.75 / 1.1 = 2,864　P = 2,200 × 0.25 /1.1 = 500
만기손익 = Max [20,000 - 15,000, 0] - (2,864 + 500) × 1.1 = 1,300원

38 ①

$\frac{F}{S_0}=\frac{1+R_K}{1+R_A}$ 에서 $F=\frac{1.08}{1.04}\times 950$원 = 986.54원

$F<\frac{1+R_K}{1+R_A}\times S_0$ 이므로 선물은 매수하고, 한국에서 대출, 미국에서 차입한다.

39 ⑤

풋콜패러티를 이용하면 $\frac{1250}{1.04}+P_0-300=\frac{1000}{1.06}$ 에서 Put=41원

40 ③

a. 3개월 만기의 달러 콜옵션을 매도한다.
e. 3개월 만기의 달러화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한다.
b, c, d는 적절한 설명임

04 ④

$p=(P_1, P_2, P_3)$을 나타내는 가격벡터이고 $x=(X_1, X_2, X_3)$을 나타내는 수량벡터라고 하자. 이 경우 주어진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안의 값은 주어진 가격벡터하에서 해당 수량벡터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액) * 은 실제 실현된 경우를 표시함

	x_1	x_2	x_3
p_1	12*	12	13
p_2	12	10*	10
p_3	17	17.5	17*

비교 1 : p_1하에서 x_1은 x_2 및 x_3에 대해 현시선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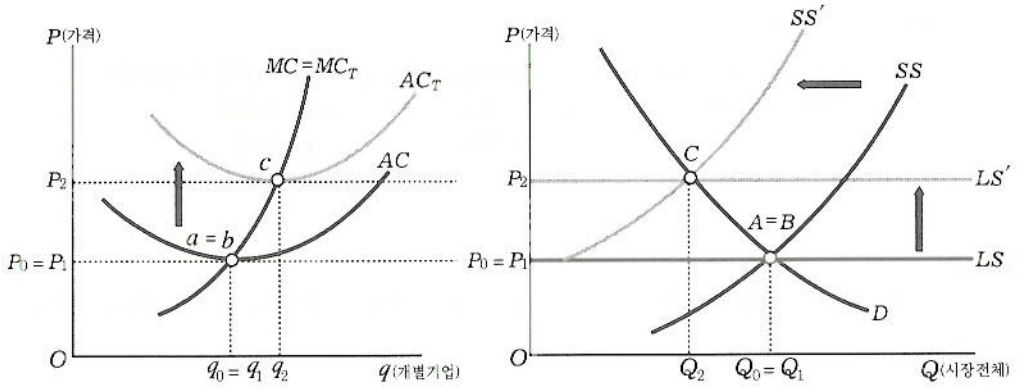
비교 2 : p_2하에서는 x_2가 x_3에 대해 현시선호됨

비교 3 : p_3하에서는 x_3가 x_1에 대해 현시선호됨

이상에서 약공리를 위반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비교 1 및 비교 2에서 x_1은 x_3에 대해 간접현시되었는데, 비교 3에서 x_3가 x_1에 대해 현시선호되었으므로 강공리를 위반한다.

05 ②

고정비용이 상승하면 한계비용은 불변이지만 평균비용이 상승한다. 이 경우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이 불변이므로 시장균형가격도 불변이다. 따라서 기업의 단기 생산량은 불변이다.($a=b$)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평균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기업이 이탈하며 시장균형가격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 잔류한 기업들의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한다.(c)



06 ③

$L^d=1,200-10w=L^s=20w$에서 $w^*=40$, $L^*=800$이 된다. 이때 경제적 지대 rent $=\frac{1}{2}\times 40\times 800=16,000$이 된다.

예산제약식 $C_1+\frac{C_2}{1+0.25}=10,000$

시점간 한계대체율이 $MRS_{C_1,C_2}=\frac{MU_{C_1}}{MU_{C_2}}=\frac{2C_2}{C_1}$ 이므로 최적소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적소비조건 : $MRS_{C_1,C_2}=1+r$ 또는 $\frac{2C_2}{C_1}=1.25$

최적소비조건을 예산제약식과 연립하여 풀면 $C_1=\frac{20,000}{3}$, $C_2=\frac{12,500}{3}$ 이 성립한다.

12 ②

임금률상승의 대체효과 : 노동공급 증가
임금률상승의 소득효과 : 노동소득 감소
⇨ 만약 노동자의 효용함수가 레온티에프 형이라면 대체효과는 작용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작용한다. 따라서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13 ②

사회적인 최적방목두수는 방목된 소의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반면 방목된 소의 평균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소를 방목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한다.

최적방목두수 : $MP=250-H=MC=50$에서 $H^*=200$

공유의 비극시 : $AP=250-\frac{1}{2}H=MC=50$에서 $H_0=400$

14 ⑤

주어진 문제를 보수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당 2	
		A안	B안
정당 1	A안	(200, 100)	(0, 0)
	B안	(0, 0)	(100, 200)

이 경우 (A, A), (B, B)의 2개의 순수균형이 존재한다.
혼합전략을 고려한다면 정당 1은 정당 2가 어떤 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모르게 만들어야 한다. 정당 1이 A안을 선택하는 확률을 p라고 할 때,
정당 2가 A안을 선택한 경우 정당 2의 기대보수 : $p\times100+(1-p)\times0=100p$
정당 2가 B안을 선택한 경우 정당 2의 기대보수 : $p\times0+(1-p)\times100=200-200p$
위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은 p=2/3이 된다. 같은 식으로 정당 2가 A안을 선택할 확률은 q=1/3이 된다.

21 ④

1) 근로자의 보수는 $U_L = \alpha f(e) - e = \alpha\sqrt{e} - e$이다. $dU_L/de = \alpha/(2\sqrt{e}) - 1 = 0$을 풀면 $e(\alpha) = \alpha^2/4$를 얻는다.

2) 근로자의 최적대응을 고려한 고용주의 보수는 $U_E = (1-\alpha)\sqrt{(\alpha^2/4)} = (\alpha - \alpha^2)/2$이다. U_E는 $\alpha = 1/2$에서 극대화된다. 따라서 완전균형에서 고용주는 $\alpha = 1/2$를 선택한다.

22 ②

② 부가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투입물의 가치를 뺀 것이다. 빵회사의 부가가치는 50이 된다.

③ 빵과 치즈가 모두 피자 회사에 판매되어 피자를 생산하기 위한 투입물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ㄱ)에 들어갈 숫자는 85이다.

23 ④

정부는 민간의 결정을 보고 이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민간은 이러한 선택을 고려하여 가능한 착각이 없는 선택을 하려 할 것이다. 민간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정부는 다음 식을 극소화하려 할 것이다. (손실함수에 필립스곡선을 대입)

$$\min L(\pi) = u_n - \alpha(\pi - \pi^e) + \gamma\pi^2$$

1계조건 : $\frac{\partial L}{\partial \pi} = -\alpha + 2\gamma\pi = 0$ 정리하면 $\pi = \frac{\alpha}{2\gamma}$, 민간은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pi^e = \frac{\alpha}{2\gamma}$

24 ⑤

①~④는 모두 처분가능소득 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저축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계소비성향이 0과 1사이이며 소득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케인즈의 소비모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25 ②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평생부를 매기간 일정액씩 소비하는 소비평준화(consumption smoothing)를 이루려 할 것이다. 따라서 김씨의 최적 소비는 $C = \frac{W + RY}{T} = \frac{10{,}000 + 20 \times 2{,}000}{50} = 1{,}000$(만원)이 된다.

26 ①

비례세가 존재하는 경우 균형재정승수는 $\frac{1-c}{1-c(1-t)}$이다. 이때 설문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Delta Y = \frac{1-c}{1-c(1-t)} \times \Delta G = \frac{1-0.8}{1-0.8(1-0.2)} \times 180 = \frac{0.2}{0.36} \times 180 = 100$$

32 ②

1. 기업 1의 이윤극대화조건

$\max\ \pi_1 = (10 - q_1 - q_2)q_1 - 4q_1 \Rightarrow \frac{\partial \pi_1}{\partial q_1} = 10 - 2q_1 - q_2 - 4 = 6 - 2q_1 - q_2 = 0$

2. 기업 2의 이윤극대화조건

$\max\ \pi_2 = (10 - q_1 - q_2)q_2 - q_2^2 \Rightarrow \frac{\partial \pi_2}{\partial q_2} = 10 - q_1 - 2q_2 - 2q_2 = 10 - q_1 - 4q_2 = 0$

위 식들을 연립하면 $q_1^* = 2$, $q_2^* = 2$가 도출된다.

33 ③

근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국제원유, 원자재가격 등)

34 ②

'순자본유출 = 순대외자산증가 = 경상수지흑자'의 등식이 성립하므로 본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르는 것과 같다.

ㄱ.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국제신용등급하락 ==> 경상수지개선
ㄴ.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국제신용등급하락 ==> 경상수지개선
ㄷ.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 ==> 경상수지악화
ㄹ.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 ==> 경상수지악화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하며 BP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며 소득이 증가하지만,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한다.)

35 ①

무역개시이전 국내균형가격은 $Q_d = Q_s$, 즉 $20 - 4P = 8 + 2P$에서 $P^* = 2$가 된다.
관세부과이전 $Q_d = 20 - 4P = 14$, $Q_s = 8 + 2P = 11$에서 3의 수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단위당 1원의 가격이 부과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가격은 2.5원이 되어 수입이 중단된다. 이처럼 수입이 중단될 정도로 높은 관세를 금지적 관세(prohibitive tariff)라고 한다.

36 ④

① 규모수익 : 알 수 없음, 한계생산 : 알 수 없음, 대체탄력성 : 일정(=1)
② 규모수익 : 체증, 한계생산 : 일정, 대체탄력성 : 일정(=1)
③ 규모수익 : 일정, 한계생산 : 일정, 대체탄력성 : 일정(=0)
④ 규모수익 : 일정, 한계생산 : 체감, 대체탄력성 : 일정(=1)
⑤ 규모수익 : 일정, 한계생산 : 일정, 대체탄력성 : 일정(=∞)

상 법

01. ②	02. ③	03. ②	04. ①	05. ②	06. ③	07. ①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②	15. ③	16. ②	17. ①	18. ②	19. ④	20. ①
21. ①	22. ③	23. ④	24. ②	25. ③	26. ①	27. ④	28. ④	29. ③	30. ②
31. ⑤	32. ①	33. ③	34. ③	35. ②	36. ③	37. ①	38. ①	39. ②	40. ①

01 ②

2009년 기출문제 변형

① 판례에 의하면 영업의 준비행위를 개시함으로써 그의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한다(대법원 1999. 1. 29. 98다1584 판결).

②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만 이때 비로소 권리능력과 상인자격이 발생한다.

③ 대법원 2007. 7. 26. 2006마334 결정.

④ 상인이란 상거래로 인한 법률효과(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상거래 즉, 사법적인 '거래관계'에서의 명의(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세관청, 허가관청, 법원 등에 대한 '공법관계'에서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다.

⑤ 즉,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전혀 상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3. 24. 85다카2219 판결).

02 ③

㉠㉢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거래 또는 겸직이 금지되지만, 허락이 있으면 거래나 겸직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 보조적 상행위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했더라도 그 행위는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03 ②

① 즉, 회사가 아니면 상호 중에 회사라는 문자를 쓸 수 없다.

② 회사는 (회사분할을 해서 별개의 회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여러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상호는 하나만을 쓸 수 있다.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 여러 개의 영업을 하지만 상호는 "삼성전자주식회사"라는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다.

③ 즉, 물적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호를 가등기할 수 있다.

④ 즉, 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2항)과 손해배상청구권(동조 제3항)은 별개의 권리이다.

⑤ 즉, 면책등기(또는 면책통지)를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6개월로 한다(제74조).
⑤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다(제9조).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도 적용된다.

08 ⑤

①②③ 대리상과 중개인의 구별기준으로서 중요한 내용들이다.
④ 예컨대, 농민이 위탁매매인에게 농산물의 매매를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⑤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에게는 특별상사유치권 규정이 있지만(제91조, 제111조), 중개인에게는 일반상사유치권(제58조)이나 민법상의 유치권 규정이 적용될 뿐 따로 특별상사유치권 규정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

09 ②

① 즉, '실질적 1인회사' 도 1인회사로 본다.
② 판례의 태도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 는 통설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주주와 회사의 인격은 별개이므로 형법상 횡령죄, 배임죄 등은 성립한다.
④ 주주와 회사의 인격이 별개이고, 또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 간접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10 ③

① 제204조
② 제197조
③ 경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198조 제1항).
④ 제200조 제2항
⑤ 제196조 본문. 참고적으로, 이 경우에 그 사원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제의 지연으로 인해 회사에 생긴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동조 단서).

11 ④

①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의 원인이 되어 그 상속인이 출자가액을 환급받게 되지만(제218조 3호 - 원칙),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원의 권리의무를 승계-상속-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제219조 - 예외). 그러나 해산 후에 즉, 청산 중에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정관규정이 없더라도 지분이 상속된다(제246조).
② 제278조에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부분은 임의규정인 반면 대표권이 없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③ 제275조
④ '합명회사와 그 사원' 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원간' 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제212조 제1항 - "각 사원은 연대하여…").
⑤ 즉,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제283조 제1항).

15 ③

㉠ 주식회사의 법정최저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2009년 상법개정시에 폐지되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만 있어도 된다(제383조 제1항 단서).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제409조 제4항).
㉣ 옳은 문장이다. 참고적으로, 회사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 즉,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363조 제5항 전단).

16 ②

㉠㉣ 판례에 의하면 B에게 납입가장죄 또는 특별배임죄는 성립하지만,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주금액을 가장납입한 발기인은 제322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임의 성질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특별한 책임 즉, 법정책임이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 판례 역시 수인의 발기인이 가장납입에 관여한 경우 이들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주식인수인은 성립후의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주금반환의무' 즉, 상환의무를 진다(판례).
㉤ 즉, 판례는 납입유효설의 입장에서 주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甲회사는 (자본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한)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 즉, 회사설립의 객관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이 틀린 문장이다.

17 ①

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지만(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주식의 인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02조 제3항).
② 제305조 제1항
③ 제320조 제1항
④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을 말한다(제321조 제1항).
⑤ 유사발기인의 책임을 말한다(제327조).

18 ②

①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으므로(제345조) 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
②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③ 상환주식이 아니라 전환주식에 관한 내용이다(제348조).
④ '이익배당우선주'만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상환으로 인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이사회의 신주발행권한은 회복되지 않는다(통설).

23 ④

① 제335조 제1항 단서

② 즉,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고,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③ 제335조의2 제4항

④ 이 지문의 다른 부분은 모두 옳다(제335조의3 제1항, 제335조의4 제1항). 다만 매도가액의 결정 부분이 틀렸는데, 상대방지정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의 매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매도청구인' 의 협의로 결정하되(제335조의5 제1항), 만약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한다(동조 제2항, 제374조의2 제4항).

⑤ 즉,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7).

24 ②

①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된 경우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고,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결의는 그 내용이 주주유한책임을 규정한 법령(제331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② 주식회사의 해산(제517조 2호, 제518조)과 회사의 계속(제519조, 제520조의2 제3항)은 모두 특별결의사항이다. 옳은 문장이다.

③ 정관에 의해 총회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제461조 제1항 단서).

④ "10분의 1" 을 초과해야 의결권이 제한된다(제369조 제3항).

⑤ 산입하지 않는다(제371조 제1항).

25 ③

① 즉,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와 같은 비율이다.

② 제435조

③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에 (모든 종류의 주주가 아니라) '그 종류의 주주' 의 종류주주총회가 있어야 한다(제436조).

④ 즉, 무의결권주주는 일반주주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 소집을 통지할 필요도 없지만, (무의결권주주가 포함되어 있는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되어서 소집되는)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있으므로 그 소집은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주총회에 그대로 준용된다.

⑤ 제436조, 제344조 제3항. 참고적으로, 제436조 앞부분에서 '특수한 정함을 한다' 는 것은 회사가 주식을 배정할 때 어느 종류의 주주를 다른 종류의 주주와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로서, (제435조 또는 제436조 뒷부분에서 말하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친다' 는 것과 유사한 의미이다.

26 ①

① 상법상으로는 이사선임결의무효의 소,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인정된다.

② 가처분명령이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무 외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

③ 제408조 제2항

30 ②

① 일반적인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대규모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규모상장회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대규모상장회사'의 의무이다.

③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보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그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지문과 같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6호).

④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법이 그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며,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특칙을 두었는데, 특히 중립성을 강화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대표가 반드시 사외이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A회사는 대규모상장회사가 아니다.

⑤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 지문과 같이 하여야 한다(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31 ⑤

① 제462조의2 제1항

② 동조 제2항

③ 동조 제4항 전단

④ 동조 제4항 후단이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연도 중에 주식배당을 통해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가 발행된 연도(즉,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⑤ '일반적으로' 혹은 '질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제462조의2 제6항, 제340조), 약식질권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통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 약식질권자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⑤가 "가장 잘못된" 지문이다.

32 ①

㉠ 전환사채에도 제470조가 적용된다.

㉡ 제3자에게 발행할 때에만 총회특별결의로 하고, 그 외에는 이사회결의로 발행한다.

㉢ 대법원 2004. 6. 25, 2000다37326 판결

㉣ 전환청구는 할 수 있고, 다만 의결권 행사는 폐쇄기간 경과 후에 가능하다.

㉤ 물상대위가 인정된다(제516조 제2항, 제339조).

33 ③

① 수인의 공동발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는데(어음법 제47조 제1항 참조) 소지인은 그 중 '1인'에 대하여 어음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② 진정한 성명이 아닌 예명은 기명에 불과할 뿐이므로 날인이 있어야 한다.

효력만은 인정된다.

③ 이 배서는 6월 15일부터 장래에 대하여 배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불소급설) 이 배서가 '성립'한 것은 5월 1일이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기한후배서의 판단은 배서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배서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의 배서는 일반적인 배서 즉, 기한전배서가 된다.

④ 자신이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진다.

⑤ 즉, 이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소지인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원래의 보충권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37 ①

① 어음금액은 문자(한글, 한자 등) 또는 숫자 어느 것으로 기재해도 관계없다(어 제6조 참조).

② 어음법 제75조(또는 환어음에 관한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발행지' 또는 '지급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과 혼동하면 안된다.

③ 이와 같은 '부기한 지' 따위는 아예 어음요건이 아니다.

④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라고 해야 옳다(어 제76조 제4항).

⑤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만기와 발행일의 기재가 모두 무효가 되며, 따라서 어음 자체도 무효가 된다(판례).

38 ①

① 배서인이 배서금지의 뜻을 기재했다는 것은 배서금지배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어음은 여전히 지시증권성이 유지되므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만약, ①의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이라는 부분을 "발행인이 배서를" 로 바꾸면 배서금지어음으로서 옳은 문장이 된다(어 제11조 제2항).

② 어 제16조 제1항 3문

③ 어 제20조 제1항 단서 참조.

④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없는 피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⑤ 어 제12조 제2항

39 ②

2009년 기출문제 변형

㉠ 丙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후에 어음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 계약해제에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丙의 인식은 '해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한 계약해제로써 丙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 甲이 丙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면 Y는 제3자의 항변(전자의 항변)의 논리에 의해 甲의 항변을 원용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지만, 甲이 丙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제3자의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Y는 어음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피보증인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한다(통설 : 어음보증의 부종성 혹은 종속성).

㉢ 어음의 뒷면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은 어음보증이 아닌 간략백지식배서가 될 뿐이다(어 제13조 제2항).

세법개론

01. ②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③	15. ③	16. ③	17. ②	18. ②	19. ④	20. ②
21. ④	22. ①	23. ⑤	24. ③	25. ③	26. ②	27. ⑤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④	33. ⑤	34. ②	35. ④	36. ①	37. ④	38. ②	39. ②	40. ①

01 ②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된다.

02 ①

※ 개정세법 반영 문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03 ④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04 ③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모두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05 ⑤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6 ⑤

이월결손금 공제는 기간단위별 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또는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율 : Min(ⓐ, ⓑ) = 12.8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frac{40,000,000 \times 15\% + 30,000,000 \times 10\%}{40,000,000 + 30,000,000}$ = 12.86%

ⓑ 당좌대출이자율 = 13%

[해설] 1. 사용인에 대한 월정액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과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 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대여시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을(개인)에 대한 대여금은 대여일인 2012. 1. 1. 현재 차입금인 A저축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10 ④

(1) 감가상각시부인

① 회사상각비 : 25,000,000

② 상각범위액 : 500,000,000 × 0.100 = 50,000,000

③ 상각시부인 : △25,000,000 → Min(2,500,000, 25,000,000)을 손금산입

(2)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

손금산입액 : Min(①, ②) = 10,000,000

① 개별자산별 추가 손금산입액 :

종전 감가상각비(취득원가 × 기준상각률) - 특례 전 손금인정된 감가상각비

= 500,000,000 × 7.5%* - (25,000,000 + 2,500,000) = 10,000,000

* 기준상각률 = $\frac{\Sigma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Sigma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 $\frac{40,000,000 - 2,500,000}{500,000,000}$ = 7.5%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률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법령 § 26의2 ④).

② 동종자산의 손금산입 한도 :

Σ동종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Σ특례 전 손금인정된 감가상각비

= 500,000,000 × 7.5% - (25,000,000 + 2,500,000) = 10,000,000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손금산입 2,500,000 + 손금산입 10,000,000 = 차감 12,500,000

11 ⑤

※ 개정세법 반영문제

예약매출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없다.

① 200,000,000 × 5% = 10,000,000

② Max(270,000,000, 300,000,000) × 20% - (85,000,000 - 20,000,000) + 8,000,000 = 8,000,000
△5,000,000 ➡ 0

15 ③

※ 개정세법 반영문제

(1)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1,000,000 ➡ 익금불산입(△유보)

(2)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① 회사계상액 : 2,000,000

② 세법상한도 : ⓐ × ⓑ = 2,287,500

ⓐ 채권 : 60,000,000(B/S) - 2,000,000(업무무관가지급금) + 3,000,000(유보)
= 61,000,000

ⓑ 설정률 : Max(1%, $\frac{1,500,000}{37,000,000 + 3,000,000}$ = 3.75%) = 3.75%

③ 한도초과액 : △287,500 ➡ 세무조정 없음

(3) 환입유예액 : ① - ② = 1,500,000 ➡ 익금불산입(△유보)

①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전기의 대손충당금 잔액(당기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잔액) :
= 6,000,000 - 1,000,000(전기 부인액) - 1,500,000(당기 감소액) = 3,500,000

② 당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2,000,000

(4) 세무조정 순액 : 2,500,000 익금불산입(△유보)

16 ③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17 ②

당사자	비적격합병	적격합병
甲	a.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임	b.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임
乙	e. 양도손익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f.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함
丙	h. 의제배당소득	h. 의제배당소득

* 무상주 의제배당 : 2,000주 × 10,000 = 20,000,000

재 원	지분에 따른 배정분 (20,000주×40%) =8,000주	지분비율 증가분 (10,000주−8,000주) =2,000주	Gross-up 여부
자기주식소각익	의제배당 ×	의제배당 ○	×

∴ 금융소득금액 = 32,000,000 + 10,000,000 = 42,000,000

22 ①

(1) 공제부금에서 수령한 금액이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인 경우(경우 1)

기타소득 = 해지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7,500,000 − (300,000 × 24개월 − 3,000,000) = 3,300,000

[별해] 기타소득 = 이자부분 + 원금 중 소득공제받은 부분

= 300,000 + 3,000,000 = 3,300,000

이자부분 7,500,000 − 300,000 × 24개월 = 300,000	
원금 중 소득공제분 3,000,000(2011년)	원금 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부분 300,000 × 24개월 − 3,000,000 = 4,200,000

(2) 공제부금에서 수령한 금액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인 경우(경우 2)

이자소득 = 공제금 수령액 − 납입부금

= 7,500,000 − 300,000 × 24개월 = 300,000

[별해] 이자소득 = 이자부분 300,000

이자부분 7,500,000 − 300,000 × 24개월 = 300,000	
원금 중 소득공제분 3,000,000(2011년)	원금 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부분 300,000 × 24개월 − 3,000,000 = 4,200,000

23 ⑤

출자공동사업자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한 자로서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1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① 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 = 총퇴직급여 - 2011.12.31. 중간정산가정액
= 500,000,000 - 400,000,000 = 100,000,000

② 퇴직소득 한도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급여 × 10% × 2012.1.1. 이후 근속연수 × 3배
= 250,000,000 × 10% × 1년 × 3배 = 75,000,000

③ 한도초과액 : ① - ② = 25,000,000

*2 근속연수 : 1997. 6. 30 ~ 2012. 12. 31 → 15년 6개월 → 16년

27 ⑤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③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8 ③

※ 개정세법 반영문제

(1) A주택의 양도(1세대 2주택)

① 양도차익 = 350,000,000 - 190,000,000 - 10,000,000 = 150,000,00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50,000,000 × 10%(3년 이상 4년 미만) = 15,000,000

(2) B주택의 양도(1세대 1주택 : 고가주택)

① 양도차익 = 1,200,000,000 - 800,000,000 - 40,000,000 = 360,000,00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360,000,000 × 40%(5년 이상 6년 미만))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36,000,000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합계 = 15,000,000 + 36,000,000 = 51,000,000

29 ⑤

모두 옳은 표현이다.

30 ⑤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6 ①

구 분	계산내역	재고매입세액
제 품	22,000,000원 × 10/110 × (1 - 40%)	1,200,000원
토 지	(면세대상이므로 계산대상이 아님)	-
소형승용차	(구입시 매입세액불공제되었으므로 계산대상이 아님)	-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계산하지 아니함)	-
건 물	55,000,000원 × 10/110 × (1 - 5% × 5) × (1 - 30%)	2,625,000원
계		3,825,000원

37 ④

※ 개정세법 반영문제

영농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8 ②

상품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9 ②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40 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연매출액의 계산

충성포인트 단위당 식료품가격	사용예상비율	1포인트 공정가치	제공된 포인트	이연매출액
₩125	80%	₩100	100,000	10,000,000

(3) 20×3년의 포인트매출액

① 누적매출액

구 분	이연매출	회수비율	누적매출액
20×1년 누적매출	10,000,000	24,000/80,000	3,000,000
20×2년 누적매출	10,000,000	81,000/90,000	9,000,000
20×3년 누적매출	10,000,000	85,000/85,000	10,000,000

② 20×3년 매출액 : 10,000,000 - 9,000,000 = 1,000,000

04 ④

(1) 재매입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제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수익 : 1,000,000×3%×4/12 = 10,000

(3) 매출채권처분손실

① 어음의 만기가치	1,000,000×(1+3%×6/12) =	1,015,000
② 어음의 할인료	1,015,000×6%×2/12 =	(10,150)
③ 어음의 처분가액		1,004,850
④ 어음의 장부금액	1,000,000+10,000 =	(1,010,000)
⑤ 매출채권처분손실		(5,150)

(4) 당기손익효과 : 10,000 - 5,150 = 4,850

(5) 별해 : 총손익효과만을 구한다면 처분가액인 ₩1,004,850과 최초장부금액인 ₩1,000,000의 차이인 ₩4,850으로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05 ④

①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②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⑤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3) 순지출액 : 3,875,000 - 2,200,000 = 1,675,000
(4) 특정차입금 평균지출액 : 1,200,000 × 10/12 - 400,000 × 3/12 = 900,000
(5) 특정차입순금융비용 : 1,200,000 × 10/12 × 10% - 10,000 = 90,000
(6) 일반차입금융비용 : (1,675,000 - 900,000) × 12% = 93,000(한도 60,000*1)
*1 일반차입금 금융비용의 한도 : 6,000,000 × 12% × 1/12 = 60,000
(7) 자본화할 차입원가 : 90,000 + 60,000 = 150,000

11 ①

①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해당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리스이용자가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회계처리 할 수 있다.

12 ⑤

⑤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보고기간말까지 12개월 기간의 재무정보와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비교 재무정보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직전 문단에서 요구되는 정보 외에 이러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13 ①

①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14 ③

(1) 이자비용 계상액

① 사채의 기말장부가액	300,000 - 4,500 =	295,500
② 사채의 발행가액		293,500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2,000
④ 미지급이자	300,000 × 10% × 6/12 =	15,000
⑤ 이자비용 계상액		17,000

(2)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을 X라고 하면, $293,500 \times X\% \times 6/12 = 17,000$ $\therefore X = 11.58\%$

15 ②

(1) 20×2년의 누적진행률 : (10,000,000 - 10,200,000) × (1 - Y%) = △80,000
∴ 누적진행률 = 60%
(2) 20×2년의 포괄손익계산서상 공사원가
① 실제누적발생원가 : 10,200,000 × 60% = 6,120,000
② 포괄손익계산서의 누적공사원가 : 6,120,000 + 추가예상손실 80,000 = 6,200,000

21 ⑤

(1)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으로 가득되는 금액은 기존 공정가치 ₩400에 증분공정가치 ₩250(₩350 - ₩100)의 합계인 ₩650이 된다.

(2) 권리행사시 회계처리

(차)	현 금	300	(대)	자 본 금	500
	주식선택권	650		주식발행초과금	450

(3) 주식발행가액 효과 : ₩950 × 30명 × 100개 = 2,850,000 (증가)

22 ①

(1) 영업활동 현금흐름

1,050,000 + 55,000 + 48,000 + (273,000 - 110,000) - 118,000 + 252,000 - 124,500 - 465,000 - 180,000 + 40,000 + 120,000 = 840,500

(2)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1,050,000 + 68,000 + 55,000 + 55,000 + 48,000 + (273,000 - 110,000) - 118,000 + 252,000 - 124,500 - 465,000 - 180,000 = 803,500

23 ⑤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누적적 우선주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를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에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 (5)와 (6)은 복합금융상품이 아니다.

24 ③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20×1년에는 당기손익효과가 없으며, 20×2년에 당기손익이 ₩6,350,000만큼 증가하게 된다.

(1) 20×1년의 회계처리(재평가모형)

(차)	토 지	8,000,000	(대)	현 금	8,000,000
(차)	토 지	50,000	(대)	재평가잉여금	50,000

(2) 20×2년의 회계처리(재평가모형)

(차)	현 금	14,400,000	(대)	토 지	8,050,000
				처분이익	6,350,000

③ 주식선택권 1개당 조정후 행사가격 : ₩1,380 + ₩120 = ₩1,500

④ 잠재적보통주 : 10,000주 × (₩2,500 - ₩1,500) ÷ ₩2,500 = 4,000주

(3) 풋옵션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할 신규 주식수는 300주 × ₩3,000 ÷ ₩2,500 = 360주이다.

(4) 따라서 풋옵션의 잠재적보통주식수는 360주 - 300주 = 60주이다.

(5) 희석주당이익

구 분	보통주순이익	주식수	주당이익	희석여부
기 본 주	11,000,000	10,000주	1,100.00	
매도풋옵션	-	60주	-	
소 계	11,000,000	10,060주	1,093.44	O
주식선택권	280,000	4,000주	70.00	
소 계	11,280,000	14,060주	802.28	O

∴ 희석주당이익은 ₩802이다.

31 ④

(1) 정기리스료는 선급하는 조건이고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는 기말에 이루어지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동안 상각한다.

(3) 금융리스자산(금융리스부채) :

920,000 + (920,000 × 3.79079) + (460,000 × 0.56447) = 4,667,183

(4) 감가상각비 : (4,667,183 - 67,183) ÷ 10년 = 460,000

(5) 이자비용 : (4,667,183 - 920,000) × 10% = 374,718

32 ④

(1) 20×1년 대손충당금 : 올바른 잔액 14,200,000 × 2% - 회사계상 0 = 284,000 (과소)

(2) 20×2년 대손충당금 : 올바른 잔액 17,500,000 × 2% - 회사계상 0 = 350,000 (과소)

(3) 회계변경효과의 분석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1	20×2	20×2.12.31	계정과목
대손상각비	(284,000)	284,000		
		(350,000)	350,000	대손충당금
	(284,000)	(66,000)	350,000	

(4) 20×2년 당기순이익 : 8,400,000 - 66,000 = 8,334,000

37 ⑤

①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인 유동성순서배열법에 따라 배열한다.
③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④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8 ③

사회기반시설은 발생주의 회계도입 이전에는 어느 보고서에도 금액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자산으로 향후 매각목적이 없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지 않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회계의 자산의 정의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기에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부채와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재정상태 또는 재정운영을 왜곡하여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9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40 ①

국가회계의 재정운영표와 지방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모두 기업회계와는 달리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목적인 이익을 잘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산출하지는 형식이지만 정부의 경우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지출하는데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나타낼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함이다.

41 ③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되는데,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증가되지 않는다.
즉, 실제생산량이 정상조업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너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조업도를 사용하여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낮추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에 실제생산량을 곱하는 경우 실제생산량이 낮으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적게 배부되는데,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는 기간비용처리한다.

실 제	배 부 액
	? 시간 × ₩10/노무시간
₩80,000	= ₩90,000

과대배부 ₩10,000

(4)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90,000이고 배부율이 ₩10/노무시간 이므로 실제노무시간은 9,000시간이다. 한 단위당 투입된 노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은 2,250단위이다.

₩90,000 = 실제노무시간 × ₩10/노무시간

₩90,000 = 실제생산량 × 단위당 실제노무시간 × ₩10/노무시간

₩90,000 = 실제생산량 × 4h × ₩10/h

실제생산량 = 2,250단위

44 ③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단위당 원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기와 당기의 단위당 원가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초재공품의 환산량단위당 원가는 ₩10. 기초재공품의 전기완성분 가공원가 환산량은 400단위이다.

$\frac{₩4,000}{X}$ = ₩10

X(환산량) = 400단위

기초재공품의 물량이 1,000단위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40%이다.

45 ④

(1) 물량기준법

1) 물량기준법의 경우 단위당 결합원가가 동일하다.

$\frac{\text{결합원가}}{\text{생산수량}} = \frac{₩10,000}{500\text{파운드}}$ = ₩20/파운드

2) 보험금액

닭가슴살 + 닭날개 = ₩20×(20파운드+10파운드) = ₩600

(2)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

부 위	판매가치	비 율	결 합 원 가	단위당 원가
닭 가 슴 살	₩30,000	0.75	₩7,500	₩37.5
닭 날 개	5,000	0.125	1,250	12.5
닭 다 리	4,000	0.1	1,000	10.0
뼈와 깃털	1,000	0.025	250	2.5
	₩40,000	1	₩10,000	

보험금액 : 닭가슴살 + 닭날개 = ₩37.5×20파운드 + ₩12.5×10파운드 = ₩875

(3)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이 더 크므로 최대보험금액은 ₩875이다.

(1)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B = 270개와 제품 C = 90개를 생산한다. 그러나 제품 A를 최소한 50개 생산해야 하므로 각 제품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B제품	270개×1h =	270h
2순위 : C제품	40개×2h =	80
3순위 : A제품	50개×2h =	100
		450h

(2) 최대이익

제품 A, B, C 공헌이익 - 고정원가

= 50개×₩300 + 270개×₩250 + 40개×₩400 - ₩40,000

= ₩58,500

49 ⑤

	A(1,000개)		
	외 부	내부(1,000개)	B(1,000개)
가 격	-	P	₩1,000
변 동 원 가	-	₩100	Min(P, ₩300) + ₩500
공 헌 이 익	-	P - ₩100	
고 정 원 가		₩100,000증가	₩100,000증가

$$P(\text{최소대체가격}) \geq ₩100 + \frac{₩100,000}{1,000개}$$

$$\geq ₩200$$

$$P(\text{최대대체가격}) \leq ₩300 - \frac{₩100,000}{1,000개}$$

$$\leq ₩200$$

최소대체가격과 최대대체가격이 동일하므로 내부대체시 증분손익은 ₩0이다.

50 ④

④ 제약자원이론은 각 공정의 효율적 생산이 아닌 제약공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증가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즉,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강조한다.